

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(제2조 관련)

구 분	인증대상
1. 수도관	가.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나.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
2. 기계 및 계측·제어용 자재 및 제품	가. 밸브류 나. 펌프류 다. 수도꼭지류 라. 유량계류 마. 수도미터류
3. 도료(塗料)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	가. 콘크리트 수조,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 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나. 그 밖에 음용(飲用)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자재와 제품